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 -1004호

연남동 244-16번지 일원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 2025-34호(2025.3.13.)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구 연남동 244-16번지 일원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해 일반인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상생과(☎02-3153-9323)에 비치해 두었으며 **공람 기간 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5. 6. 9. ~ 2025. 6. 23.(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02-3153-9323)

다.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

- 사업명칭 : 연남동 244-16번지 일원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4-16번지 일원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60개월
-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용 도
2,787	33.10	230.47%	12,426.05	43.10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사항(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

구 분	총계	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40.82	49.74	59.95
총계	82	8	23	51
토지등소유자	65	6	8	51
일반분양	—	—	—	—
임대	17	2	15	—
보류지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101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및 구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근거한 용어 정비(안 제17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 구민 안전과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02)3153-1644, FAX: 02)3153-9499, 전자우편 mingju29@ma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구시”를 “청
구 시”로, “9인”을 “9명”으로, “디지털재정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예산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례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례 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재난관리총괄과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지 급	경 유 (자율방재단장)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심 의 (재해보상심의위원회) 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 확 정 (구청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u>장애 등급</u> 이 확정된 날	2. ----- <u>장해등</u> <u>급</u> -----
3. <u>장제보상</u>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3. <u>장례보상</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 <u>청구시</u> 위원장을 포함하여 <u>9인</u> 이내로 구성하되,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난관리총괄부서장, <u>디지털재정과장</u> , <u>주민생활복지과장</u> , 의약과	③ ----- <u>청구 시</u> ----- <u>9명</u> --- ----- ----- ----- <u>예산정책과장</u> , <u>복지정책과장</u> --- -----

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동장, 권역별 선임동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별지 제7호서식]

요양[], 장해[], 장애[], 유족[] 보상청구서			
※ 위·하위 항목 중 적어도 한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거나 비하거나, [] 안에 해당되는 곳에 [X] 표시를 합니다.		(일괄)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2. 구조[] 3. 구급[] 4. 기타[]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결과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청구금액		유족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단장 : (서명 또는 인)			
재난관리총괄과장 귀하			

제출서류		수수로 없음
1. 요양보상(①, ②, ③, ④, ⑤), 2. 장해보상(①, ②, ③, ④, ⑤, ⑥), 3. 장애보상(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유족보상(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자살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경 유 (지류발재단장)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심 의 (재해보상심의위원회)	
	견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	
지 급	확 정 (구청장)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서식]

요양[], 장해[], 장애[], 유족[] 보상청구서			
※ 위·하위 항목 중 적어도 한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거나 비하거나, [] 안에 해당되는 곳에 [X] 표시를 합니다.		(일괄)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2. 구조[] 3. 구급[] 4. 기타[]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결과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청구금액		유족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단장 : (서명 또는 인)			
재난관리총괄과장 귀하			

제출서류		수수로 없음
1. 요양보상(①, ②, ③, ④, ⑤), 2. 장해보상(①, ②, ③, ④, ⑤, ⑥), 3. 장애보상(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유족보상(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자살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경 유 (지류발재단장)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심 의 (재해보상심의위원회)	
	견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	
지 급	확 정 (구청장)	

마포구의 상징물



• 구의 휘장

마포가 지닌 다양한 특징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다채로움이 공존하며 도시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 구의 꽃 : 목련 꽃

잎이 나기 전 목련나무에 피는 꽃이며, 향기가 진하고 색깔은 흰색이다. 꽃잎은 6개이고, 밑부분은 연한 홍색으로 청초한 인상을 준다.



• 구의 나무 : 단풍나무

잎이 붉고 아름다우며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여 도심의 가로수나 공원수로 좋다.



• 구의 새 : 청둥오리

물오리로 마포의 밤섬에 많이 서식하는 겨울철새이다. 목이 짧고 부리는 평평하며 깃털은 수컷이 더 아름답다.



• 구의 색 : 초록색

안전을 상징하며 평화, 지성, 소박함을 뜻한다.